###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008-제50호

제출일자 : 2008. 5. 8.

제출자:사천시장

#### 1. 의결주문

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# 2. 제안이유

문화예술회관의 냉·난방시설이 보완됨에 따라 사용료 중 보조난방, 소 공연장, 전시실 사용료를 조정하고, 문화예술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활동과 무관한 대관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

#### 3. 주요내용

가. 시설사용료 중, 냉・난방사용료 조정(안 제5조 별표 1)

- 나. 시설사용료 납부방법 중, 조례와 규칙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개정함 (안 제5조)
- 나. 문화예술활동과 무관한 경우 대관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함 (안 제6조)

#### 4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담당관실

라. 기 타

1)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08. 3. 25 ~ 4. 14(20일간)

나) 예고방법 : 일간신문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공고

다) 제출의견: 없음

3) 규제심사

가) 일 시 : 2008. 3. 28(제9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)

나) 심의결과 : 원안의결

#### 사천시 조례 제 호

###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명 "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"를 "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"로 한다.
- 제3조, 제6조, 제7조, 제9조, 제13조 중 "각 호의 1"를 "각 호의 어느 하나" 로 한다.
- 제5조제1항 중 "각 호의 1과"를 "각 호의 어느 하나와"로, 같은 조 제4항 중 "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"를 "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"로 한다.
- 제6조 중 제3호 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3. 특정 제품의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- 4. 특정 종교의 포교 및 노동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제11조 중 "사용기간중"을 "사용기간 중"으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[별표 1] <개정 2003. 6. 9> **(현행)**

# 사천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

### 1. 시설 사용료

7. 14	rl 01	사 용 료		ul ¬
구 분	단 위	공 연	행 사	비고
대	오전	100,000	110,000	○ 1일 사용료는 오전·오후·야간의 합산금액으로 함 ○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공휴일의
공 연	오후	120,000	132,000	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%를 가산함 ○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사용료는
장	야간	150,000	165,000	기본시설 사용료의 30%를 징수한다 이 익일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2:00이후 사용시는 야간 사용료의
소	오전	15,000	15,000	50%를 징수함 ○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
공 연	오후	20,000	20,000	- 30분미만 초과 : 당해사용료의 20% - 30분이상 60분미만 초과 : 당해 사용료의 50%
장	야간	25,000	25,000	- 60분이상 초과 : 다음회 사용료 전액(단,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)
전시실	<b>1</b> 일/m²당	12	20	

## 2. 부대시설 사용료

구 분			단	위	사용료	비 고			
피아노	대	) हें	3	1회공	공연	20,000	○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		
774	소	<u> </u>	3	1회경	당연	10,000	당해 사용료의 50%를 징수		
슬리	라이딩	무대		1회적	<b>각동</b>	20,000	하다		
ㅁ	대	종 조	합 명	1회급	공연	30,000	○ 1회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		
무 대	공 연	보 조	통 명	1회급	공연	20,000	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○ 부대설비 사용은 기간에 상		
조 명	장	핀스 라 <sup>o</sup>		1회급	공연	10,000	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약 으로 본다		
	소	공연/	·	1회급	공연	20,000	○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		
				오	전	10,000	- 30분미만 초과 : 당해		
무	대 연	습 실	]	오	후	15,000	사용료 의 20%		
				야	간	20,000	- 30분이상60분미만 :		
영시	·기(35	m/m	1)	1회경	공연	15,000	당해 사용료의 50%		
	대공	냉	방			연료사용	- 60분이상 초과 :		
냉	연장	난	방	- 1회년	근여	, -	다음 회 사용료 전액		
•	소공	냉	방		, _	%가산	(단, 야간시간 초과시는		
난	연장	난	방			실사용액	당해사용료 전액)		
방	전 시	냉	방	1회전	ያ አነ		,		
	실	난	방	1-11	271	기가 10% 기산			
음향기본 (마이크2대			1회급	공연	10,000	※ 음향기본(마이크2대)			
무대	유청	음향반사판		1회급	당연	20,000	마이크 추가시 ・유선마이크 개당 2,000원		
음향	릴	릴 테이프			공연	30,000	· 무선마이크 개당 4,000원		
		오디오테이프 (CD, DAT 등 포함)		1회군	공연	10,000			

## 3. 기타 사용료

구	분	단 위	사용료	비고
중계방송	TV	1회	30,000	
3/1/8/3	라디오	1회	20,000	
의상 및 디	의상 및 대·소 도구		취득가액 의 5%	
빔 프 현	로 젝 트	1회	20,000	
고 그	구 판	1회	30,000	사용자 조건
드라이	아이스	1회/1대	20,000	재료비 사용자 부담
퍼 크	머 신	1회/1대	10,000	
덧	마 루	1회	20,000	사용자 조건

## [별표 1] **(개정안)**

#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(제5조 관련)

### 1. 시설사용료

구 분	단위	사 용 료		비 고
ੀ ਦ		공 연	행 사	H) 1/2
대	오전	100,000	110,000	○ 1일 사용료는 오전·오후·야간의 합산금액으로 함 ○ <b>토요일</b> , 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
공 연	오후	120,000	132,000	기본시설 사용료의 20%를 가산함 ○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사용료는
장	야간	150,000	165,000	기본시설 사용료의 30%를 징수한다 ○ 익일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2:00이후 사용시는 야간 사용료의
소	오전	15,000	15,000	50%를 징수함 ○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- 30분미만 초과 : 당해사용료의 20%
공 연	오후	20,000	20,000	- 30분이상 60분미만 초과 : 당해 사용료의 50% - 60분이상 초과 : 다음회 사용료
장	야간	25,000	25,000	전액(단,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)
전시실	<b>1일/</b> ㎡당	12	20	

## 2. 부대시설 사용료

	_	1.1	-1 -1	11 A -	- 3
	구	분 .	단위	사용료	비고
피아노	피아노대 형소 형		1회공연	20,000	○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용료의 50%를 징수
			1회공연	10,000	
슬리	<u> </u>	· ·	1회작동	20,000	하다
무	대	종 합 조 명	1회공연	30,000	○ 1회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
대	공 연	보 통 조 명	1회공연	20,000	중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○ 부대설비 사용은 기간에 상관
조 명	장	핀스포트 라이트	1회공연	10,000	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 으로 본다
	소·	공연장	1회공연	20,000	으로 쓴더 ○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
			오 전	10,000	
무 대	대 연	습 실	오 후	15,000	- 30분미만 초과 : 당해
			야 간	20,000	사용료 의 20%
영시	トフ)(35:	m/m)	1회공연	15,000	- 30분이상60분미만 :
	대공	냉 방 난 방	1회공연	연료사용 금액×10 %가산	당해 사용료의 50% - 60분이상 초과 : 다음 회 사용료 전액
냉	연장	보조난방	<b>1</b> 회공연	40,000	(단, 야간시간 초과시는
•	소공	냉 방	->>		당해사용료 전액)
난	연장	난 방	1회공연	25,000	0 11 10 32 (2 1)
방	전	냉 방			
	시 실	난 방	<b>1일</b> 전시	30,000	
		향기본 기크2대)	1회공연	10,000	※ 음향기본(마이크2대) 마이크 추가시
무대	음향반사판		1회공연	20,000	· 유선마이크 개당 2,000원
음향	릴	테이프	1회공연	30,000	・무선마이크 개당 4,000원
	오디오테이프 (CD, DAT 등 포함)		1회공연	10,000	

## 3. 기타사용료

구	분	단 위	사용료	비고
중계방송	TV	1회	30,000	
3/1/8/3	라디오	1회	20,000	
의상 및 디	의상 및 대·소 도구		취득가액 의 5%	
빔 프 현	로 젝 트	1회	20,000	
고 그	구 판	1회	30,000	사용자 조건
드라이	아이스	1회/1대	20,000	재료비 사용자 부담
퍼 크	머 신	1회/1대	10,000	
덧	마 루	1회	20,000	사용자 조건

#### [별지 제1호서식] **(현행)**

## 사천시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

		주 소	
신청	인	직업 또는 단체명	전 화
		성명 또는 대표자명	주민등록번호
		기 본 시 설	
사 -	<del>g</del>		
시 -	설	부 대 설 비	
		사 용 시 간	
		사 용 목 적	
, 1 <b>1</b>	٥	행 사 내 용	
내	용	사 용 료 구 분	
		입장료 유무	
		비고	

「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200 년 월 일

신청인주 소:

성 명: (서명 또는 날인)

사 천 시 장 귀 하

## [별지 제1호서식] **(개정안)**

#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

	주 소						
신 청	단 체 명	전 화 번 호 ( ) -					
인 인		휴 대 전 화					
	대표자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			
	기본시설	대공연장□ 소공연장□ 전 시 실□ 연습실□					
사용		$\Diamond$ $\Diamond$					
시설	부대시설	$\Diamond \Diamond \Diamond \Diamond \Diamond \Diamond$					
		◇ 전시실 사용면적( m²) ◇ 파티션( 장) ◇그림고리( 개)					
	사용시간	200 년 월 일 ~ 월 일(오전□ 오후□ 야간□)					
	사용목적						
	행사내용						
사용	사용료구분	일 반□ 감 면(전 액□ 반 액□)					
내용	입 장 료	유 료□ (학생 원, 청소년 원, 일반 원) / 무료□					
	공연시간	1회( : ) 2회( : ) 3회( : ) 4회( : ) 5회( : )					
	기타사항	무대설치 및 리허설 :					
	「사천시 문	· 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					
	청합니다.						
		20 년 월 일					
		시청기 즈 ㅅㆍ					
		신청자 주 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날인)					
사	천 시 징	귀 하					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	제명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
	조례
제3조(사용허가) 사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	제3조(사용허가)
한다)은 회관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	
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<u>각 호의</u>	
1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시설 사	
용을 허가할 수 있다.	
제1호 내지 제4호(생 략)	제1호 내지 제4호(현행과 같음)
제5조(사용기간 및 사용료) ①공연장 및 부	제5조(사용기간 및 사용료) ①
대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<u>각 호의 1과</u>	
같이 구분하며,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.	, l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(현행과 같음)
④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는 계약과 동	④회관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
<u>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사용일수가	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
2일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2회에	<u>한다.</u>
걸쳐 분납할 수 있다.	
	제6조(사용허가의 제한) <u>각 호의 어느</u>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	
니 할 수 있다	아니 할 수 있다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3. 특정 제품의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
	목적으로 하는 경우
<u> &lt;신 설&gt;</u>	4. 특정 종교의 포교 및 노동집회를 목
	적으로 하는 경우
_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제7조(허가의 취소 등) <u>각 호의 어느</u>
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	<u>하나</u>
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	
제1호 내지 제7호(생 략)	제1호 내지 제7호(현행과 같음)
제9조(사용료의 반환) 납부된 사용료는	
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<u>각 호의</u>	
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	<u> 기</u> - 아낙
_ 는 일부를 반완할 수 있다. _ 제1호 내지 제3호(생 략)	 제1호 내지 제3호(현행과 같음)
제1오 대시 제3오(생 덕) 제11조(손해배상)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	
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	
지원 첫 설비에 내하여 신당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	
다.	
<u> </u>	

현 행	개 정 안
②(생 략) <b>제13조(입장의 제한)</b> 다음 <u>각 호의 1</u> 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관람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	<del></del>
[별표 중] 시설사용료 중 비고란의 <u>토요일 오후</u> , 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 용료의 20%를 가산함	
<신 설>	부대시설 사용료 중 대공연장 보조난방 : <u>1회 공연 당 40,000원</u>
부대시설 사용료 중 소공연장 냉·난방 : <u>1회 공연 당 연료 사용</u> 금액×10% 가산	부대시설 사용료 중 소공연장 냉·난방: 1회 공연 당 25,000원
부대시설 사용료 중 <u>부대시설 전시실 냉·난방</u> : <u>1회 전시 당</u> <u>실사용액에서 10% 가산</u>	부대시설 사용료 중 전시실 냉·난방: <u>1</u> 일 전시 당 30,000원
붙임: 별표 1	붙임 : 별표 1
붙임 : 별지 제1호서식	붙임: 별지 제1호서식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